

##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법률 제16666호, 2019. 12. 3.)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국가핵심기반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5조, 제5조의2)

국가기반시설과 국가기반체계 용어를 ‘국가핵심기반’으로 통일

나. 지자체장에게 재난관리 의무위반 처분근거 마련(안 제20조)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조사권한 확보를 위해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징계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기반시설”을 “국가핵심기반을 관리하는 기관·단체 등”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호 중 “국가기반시설”을 “국가핵심기반”으로 한다.

제11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응급조치에 사용할 시설의 지정 및 관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

제1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제3항”을 “법 제34조제4항”으로 한다.

제18조 및 제18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9(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제출) 영 제73조의9제4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서는 별지 제20호의8서식에 따른다.

제20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

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한다.

④ 법 제77조제2항 및 영 제86조제3항의 통보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통보 및 징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지 제20호의8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서

|         |                                       |          |
|---------|---------------------------------------|----------|
| 제출자     | 성명                                    |          |
|         | 생년월일                                  |          |
|         | 주소                                    | (전화번호: ) |
| 지역축제 명칭 |                                       |          |
| 기 간     |                                       |          |
| 개최장소    |                                       |          |
| 주 최     | 주최기관(대표자) :                           |          |
|         | 주 소 :                                 |          |
|         | 전화번호 :                                |          |
| 주요내용    |                                       |          |
|         | ※ 공연, 위험물질 사용(폭죽, 불꽃, 인화성 물질 등) 여부 표기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의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기관의 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u>국가 기반시설</u> 의 장(이하 “재난상황의 보고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br>-----<br>-----<br>-----<br>-----<br>-----<br>-----<br>-----<br>-----<br>-----<br>-----<br><u>국가 핵심기반을 관리하는 기관·단체 등</u> -----<br>-----<br>-----. |
| 1. ~ 3.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
| ②·③ (생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제5조의2(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재난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제5조의2(재난상황의 보고 대상)<br>-----<br>-----<br>-----<br>-----.                                                                                                                 |
| 1. (생략)                                                                                                                                                                                                                                                           | 1. (현행과 같음)                                                                                                                                                             |
| 2.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                                                                                                                                                                                                                                               | 2. ----- 국                                                                                                                                                              |



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8조의2

<신 설>

제20조(기관경고의 방법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기관경고 및 징  
계 등 요구의 통보에 필요한 사  
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삭 제>

제19조의9(지역축제 안전관리계  
획 제출) 영 제73조의9제4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서  
는 별지 제20호의8서식에 따른  
다.

제20조(기관경고의 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77조제2항 및 영 제86  
조제3항의 통보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통  
보 및 징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  
다.

⑤ ----- 제4항까지-----  
-----  
-----  
-----  
-----.